2001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

2001. 12. 7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1월 21일 경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11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1.12. 7)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자 설명요지(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정의협)

가. 제안사유

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예방과 긴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대한 현행 재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이에 재난예방과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, 2001년 현재까지 400,000천원이 조성되었으며, 2002년도까지 기금조성계획은 총 524,000천원(2002년도 출연금 104,000천원, 2001년도 이월금 400,000천원, 이자수입 20,000천원)을 확보할 계획임.

○ 기금운영계획은 2002년도 민방위관리예산 524,000천원에서 자체사업예산으로 재난위험우려주민 이주지원 40,000천원, 재난위험시설안전진단 및 보수 30,000천원, 중점관리시설안전진단 10,000천원, 재난예방연구용역비 10,000천원을 사용하고 434,000천원은 불시 재난대비 예비비로 적립 관리함.

3. 질의답변요지 :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소수의견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